

2008. 7. 11(금) 10:00

제15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 목 차 】

1. 검토경과	2
2. 제출근거	2
3.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	2
가. 세입결산	2
나. 세출결산	3
다. 세입·세출 잉여금처리상황	3
라. 일반회계 세입결산	3
마. 일반회계 세출예산	4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5
사. 계속비 결산	12
아. 다음연도 이월사업	12
4. 예비비결산	13
5. 기금결산	13
6. 보조금 결산	14
7. 기타사항 의견	14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30.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8. 7. 4.
- 상정일자 : 2008. 7. 11.(제1차 총무위원회)
- 의안번호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2008 ~24호),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07 ~25호)」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3.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

가. 세입결산(결산서 p17)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분 처치	이 월	C/A	C/B
계	361,138	367,439	362,477	4,962	383	4,579	100	99
일반회계	309,238	313,385	309,840	3,545	383	3,162	100	99
특별회계	51,900	54,054	52,637	1,417	0	1,417	101	97

나. 세출결산(결산서 p19)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액 행위액 (D)	지출액 (E)	다음연도액 이월액 (F)	불용액 G=C-E-F	미수납액 G/C (%)
계	295,488	65,650	361,138	294,134	262,954	76,518	21,666	6
일반회계	248,907	60,330	309,238	255,018	226,487	70,907	11,844	3.8
특별회계	46,581	5,320	51,900	39,116	36,467	5,611	9,822	18.9

다.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결산서 p20)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사월	사과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 잉여금
계	362,477	262,954	99,523	44,611	13,539	18,367	1,091	21,914
일반회계	309,840	226,487	83,354	40,302	12,964	17,641	1,081	11,366
특별회계	52,637	36,467	16,169	4,309	575	726	10	10,548

라.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26)

(단위:백만원)

과 목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313,385	309,840	3,545	383	3,162	98.9
지방세		16,709	15,736	973	116	857	94.9
	보통세	14,742	14,303	439	11	429	97.6
	목적세	1,018	991	26	1	25	97.6
	과년도수입	949	442	508	104	403	50.1
세외수입		87,637	85,065	2,572	267	2,305	97.1
	경상적 세외수입	6,145	6,133	12		12	99.8
	임시적 세외수입	81,492	78,932	2,560	267	2,293	96.9
지방교부세		122,214	122,214				100
조정교부금		5,632	5,632				100
보조금 (국고보조금)		81,193 (54,733)	81,193 (54,733)				1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

마.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서 p31)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309,238	255,018	226,487	70,907	11,844
총무위원회	136,275	120,140	113,159	18,472	4,644
의회운영위원회	886	815	815		71
산업건설위원회	164,482	128,871	107,506	52,435	4,541
기 타 , 지 원	7,595	5,007	5,007		2,588

▶ 총무위원회 소관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비 고 (항 번호)
소 계	136,275	120,140	113,159	18,472	4,644	
기 획 감 사 실	6,616	6,052	5,873	225	518	1211~1216
종 합 민 원 실	860	823	588	235	37	1221,2411,2412
행 정 과	36,752	35,351	35,338	125	1,289	1111,1231~1234
재 무 과	3,243	2,275	2,275	700	268	1251~1256
주민생활지원과	11,042	10,871	10,671	200	171	2316,2321~2324
사 회 복 지 과	25,779	23,576	21,489	3,105	1,185	2311~2315
문 화 관 광 과	28,058	19,681	15,752	11,856	450	2111,2112,2113,3221
전략사업추진단	7,535	7,290	7,283	140	112	1261,2114
보 건 소	6,748	5,128	4,667	1,809	272	2211~2215
교육문화센터	1,439	1,342	1,328	14	97	2115, 2116,
수승대사업소	251	235	228	0	23	3222
읍 면	7,952	7,701	7,666	62	222	1236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결산서 p163)

□ 전 용

(단위: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사 유
		세항	세세항	목		감 액	증 액	
계	8건				2,621,504	929,598	729,598	
행정 과	공무원체 육행사	공무원단체	경상적 경비	301-10	35,500	23,400		○ 공직선거법 제12 조에 의거 법률에 근 거하지 않는 보상금 은 지급이 제한됨으 로 직원체육행사비로 전용함
		행정관리	경상적 경비	201-02	59,900		23,400	
행정 과	직급보조비 확보	행정관리	경상적 경비	201-01	644,525	10,000		○ 공로연수및 신규 직원 직급보조비 부 족분 확보를 위해 전 용함.
		행정관리	경상적 경비	204-02	487,000		10,000	
사회 복지 과	월성청소년 개보수사업 추진	여성청소년	보조사업	402-01	125,000	125,000		○ 당초 월성청소년 수련원 개보수사업 민간 자본보조로 편 성으로 인한 변경
		여성청소년	보조사업	401-01	124,100		124,100	
		여성청소년	보조사업	401-03	900		900	
사회 복지 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청소년	보조사업	201-01	50,000	47,817		○ 당초 청소년 동반 자 프로그램운영이 목별 구분없이 편성 되어 이에 따른 변경
		여성청소년	인건비	101-10	41,017		41,017	
		여성청소년	보조사업	301-10	6,800		6,800	
사회 복지 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경로복지	보조사업	307-02	452,482	452,482		○ 보건복지부 및 경 남도 세부사업 변경
		경로복지	보조사업	307-05	452,482		452,482	
사회 복지 과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장애인가동	보조사업	307-02	70,899	70,899		○ 보건복지부 및 경 남도 세부사업 변경
		장애인가동	보조사업	307-05	70,899		70,899	

【검토의견】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대원칙이 있으므로 예산을 전용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통보(보고)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사업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됨.

□ 이 체(일반회계)

(단위: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사유
		세항	세세항	목		감 액	증 액	
계	52건				13,078,359	10,643,233	10,643,233	
기획감 사실	전문가 전략 회의 참석자 보상	인구정책	경상적 경비	301-10	3,600	3,600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301-10	10,500		3,600	
	거창미래전략 연구소 연구사업	인구정책	자체사업	306-00	150,000	150,000		
		기획관리	자체사업	306-00	5,000		150,000	
	서비스품질평 가제 시행	인구정책	자체사업	403-02	40,000	40,000		
		기획관리	자체사업	403-02	△40,000		40,000	
전략사 업추진 단	인구증가시책 업무 추진 (홍보물제작 외)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201-01	238,174	20,000		조직개편 으로 사무이관
		인구정책	경상적 경비	201-01			20,000	
	인구시책 토 론회 참석자 보상금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301-10	10,500	8,000		
		인구정책	경상적 경비	301-10	3,600		8,000	
	인구시책제안 자 및 유공자 시상금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301-12	8,500	8,000		
		인구정책	경상적 경비	301-12			8,000	
	인구증가시책 우수공무원 포상금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303-00	40,600	2,000		
		인구정책	경상적 경비	303-00	5,500		2,000	
주민생 활지원 과	충훈답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보장	인건비	101-10	8,831	8,203		조직개편 으로 과 신설
		주민생활	인건비	101-10			8,203	
	일반운영비(일 반수용비등)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201-01	189,629	37,720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201-01	47,680		37,720	
	일반운영비(일 반수용비등)	교육문화	경상적 경비	201-01	281,128	2,660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201-01	47,680		2,660	

	보훈단체행사 참석차량임차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201-02	4,800	4,800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201-02			4,800	
주민 생활 지원 과	국내여비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202-01	47,028	15,134		조직개편 으로 과 신설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202-01	20,310		15,134	
	국내여비	교육문화 센터운영	경상적 경비	202-01	34,078	4,320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202-01	20,310		4,320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203-03	5,000	1,500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203-03	2,000		1,500	
	참전수당등사 회보장적수혜 금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301-01	220,785	220,635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301-01	36,000		220,635	
	행사실비보상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301-10	13,200	13,200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301-10			13,200	
	행여인 여비 등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301-12	19,480	14,480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301-12	3,000		14,480	
	보훈회관승강 기및물리치료 실운영비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307-02	6,000	6,000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307-02			6,000	
	행충일추념행 사등민간행사 보조위탁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307-04	6,000	17,900		
		주민생활	경상적 경비	307-04			17,900	
	수급자 생계 비 등	사회보장	보조사업	301-01	7,705,298	7,080,757		
		주민생활	보조사업	301-01	63,030		7,080,757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설치	행정관리	보조사업	401-01	60,000	60,000		
주민생활		보조사업	401-01	90,000		60,00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 환경개선사업	사회보장	보조사업	402-01	32,000	32,000			
	주민생활	보조사업	402-01	210,000		32,000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상담실	행정관리	보조사업	405-01	39,200	36,000			

	컴퓨터및집기구입	주민생활	보조사업	405-01	36,000		36,000	
주민생활지원과	이재민구호위문품	사회보장	자체사업	302-02	5,930	5,930		
		주민생활	자체사업	302-02			5,930	
	의료보호진료비균비부담을위한 전출금	사회보장	기타	701-00	430,110	324,110		
		주민생활	기타	701-00	2,896		324,11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	사회보장	기타	702-00	50,000	50,000		
		주민생활	기타	702-00			50,000	
	긴급복지지원	복지기획	보조사업	301-01	271,015	195,971		
		통합조사	보조사업	301-01	△96,268		195,971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복지기획	인건비	101-10	213,544	210,317		
		서비스연계	인건비	101-10			210,317	
	자활사업관련 홍보물제작, 행사참가 임차료	복지기획	경상적 경비	201-02	1,460	1,460		
		서비스연계	경상적 경비	201-02			1,460	
	자활근로사업 소모품구입, 보험료	복지기획	보조사업	201-01	9,288	9,288		
		서비스연계	보조사업	201-01			9,288	
	자활소득공제	복지기획	보조사업	301-01	271,015	56,923		
		서비스연계	보조사업	301-01	4,593		56,923	
	고용촉진훈련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301-12	89,291	89,291		
		서비스연계	보조사업	301-12	△10,641		89,291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종사자 수당	복지기획	보조사업	307-03	171,000	171,000		
		서비스연계	보조사업	307-03	3,673		171,000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복지기획	보조사업	402-02	1,216,417	1,216,417			
	서비스연계	보조사업비	402-02			1,216,417		
공공근로사업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401-01	235,297	235,297			

조직개편
으로
과 신설

		서비스 연계	자체사업	401-01	72,000		235,297	
주민 생활 지원 과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	지역경제 관리	자체사업	401-03	1,707	1,707		조직개편 으로 과 신설
		서비스 연계	자체사업	401-03			1,707	
	자원봉사 코디 네이팅 도우미사업	여성 청소년	인건비	101-10	33,898	33,898		
		복지관 운영	인건비	101-10	△19,894		33,898	
	복지관 일반 운영비	종합사회 복지	경상적 경비	201-01	127,706	125,863		
		복지관 운영	경상적 경비	201-01			125,863	
	자원봉사 행 사운영비	여성 청소년	경상적 경비	201-02	8,740	3,100		
		복지관 운영	경상적 경비	201-02			3,100	
	복지관 사회 보장적수혜금	종합사회 복지	경상적 경비	301-01	7,300	7,300		
		복지관 운영	경상적 경비	301-01			7,300	
	자원봉사 행 사실비보상금	여성 청소년	경상적 경비	301-10	29,705	5,280		
		복지관 운영	경상적 경비	301-10			5,280	
	복지관 행사 실비 보상금	종합사회 복지	경상적 경비	301-10	6,150	6,150		
		복지관 운영	경상적 경비	301-10			6,150	
	자원봉사 기 타보상금	여성 청소년	경상적 경비	301-12	5,950	1,450		
		복지관 운영	경상적 경비	301-12			1,450	
	공무원 자원봉 사활동 우수자 시상금	여성 청소년	경상적 경비	303-00	1,000	1,000		
		복지관 운영	경상적 경비	303-00			1,000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 입	여성 청소년	보조사업	201-01	93,393	12,449		
		복지관 운영	보조사업	201-01			12,449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여성 청소년	보조사업	301-10	13,200	1,200			
	복지관 운영	보조사업	301-10			1,200		
자원봉사 활 성화 사업	여성 청소년	보조사업	307-03	20,000	20,000			

		복지관 운영	보조사업	307-03			20,000	
주민 생활 지원 과	전문봉사활동 재료구입	여성 청소년	자체사업	206-00	15,520	2,000		조직개편 으로 과 신설
		복지관 운영	자체사업	206-00			2,000	
	보안등 및 전 기시설 재료구입비	종합사회 복지	자체사업	206-00	33,723	33,723		
		복지관 운영	자체사업	206-00			33,723	
	시설비 및 부 대비	종합사회 복지	자체사업	401-01	23,000	23,000		
		복지관 운영	자체사업	401-01			23,00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여성 청소년	자체사업	403-02	2,200	2,200		
		복지관 운영	자체사업	403-02			2,200	
	자산 취득비	종합사회 복지	자체사업	405-01	10,000	10,000		
		복지관 운영	자체사업	405-01			10,000	

□ 이 체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사유
		세항	세세항	목		감 액	증 액	
계	11건				796,009	732,741	732,741	
주민 생활 지원 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사업	인건비	101-08	20,620	18,988		조직개편 으로 과신설
		의료급여기금	인건비	101-08			18,988	
		의료보호 기금사업	보조사업	201-01	5,520	5,520		
		의료급여기금	보조사업	201-01			5,520	
		의료보호 기금사업	보조사업	202-01	6,860	6,385		
		의료급여기금	보조사업	202-01			6,385	
		의료보호 기금사업	보조사업	405-01	1,500	1,500		

		의료급여기금	보조사업	405-01			1,500	
		의료보호 기금사업	보조사업	501-01	500	500		
		의료급여기금	보조사업	501-01	△500		500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사업	보조사업	802-03	110,000	109,938		조직개편 으로 과신설
		의료급여기금	보조사업	802-03	△20,000		109,938	
		의료보호 기금사업	자체사업	308-05	430,110	324,110		
		의료급여기금	자체사업	308-05	2,896		324,110	
		의료보호 기금사업	기타	802-01	6,500	6,500		
		의료급여기금	기타	802-01	18,352		6,50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특별 회계	저소득주민생활 활안정자금	경상적 경비	202-01	2,200	2,000		
		저소득주민생활 안전자금지원	경상적 경비	202-01			2,000	
		저소득주민생활 활안정자금	자체사업	501-01	200,000	200,000		
		저소득주민생활 안전자금지원	자체사업	501-01	△45,849		200,000	
		저소득주민생활 활안정자금	예비비	801-00	57,300	57,300		
		저소득주민생활 안전자금지원	예비비	801-00			57,300	

【검토의견】

- 예산의 이체(移替)는 지방재정법 제47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은 모두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사업추진단의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사. 계속비 결산(p175)

(단위:천원)

재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11,343,249	9,237,016	20,580,265	13,308,958	7,215,465	55,842
국고 보조	복합문화단지 조성	1,666,600	1,094,934	2,761,534	68,839	2,692,695	
국고 보조	거창스포츠파크	7,750,000	4,845,895	12,595,895	8,073,125	4,522,770	
국도비 보조	노인여성장애인 삶의쉼터조성사업	1,926,649	3,296,187	5,222,836	5,166,994		55,842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
- 그러나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집행실적(68,838천원)보다 이월액(2,692,695천원)이 많으므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7월 현재까지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아.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p189~227)

(단위: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이월액	비 고
명시이월	계	41	8,429	7,751	
	일반회계	41	8,429	7,751	
	특별회계				
사고이월	계	17	3,722	3,007	
	일반회계	17	3,722	3,007	
	특별회계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 41건 8,429백만원,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7건 3,722백만원이며, 총 이월사업은 58건 12,151백만원이 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보상지연 등 주요 사유로 이월 되었음.

4. 예비비 결산(결산서 p185)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건	218,173	218,173	218,173		
선거관리	거창군(나)선거구재선거	218,173	218,173	218,17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원임.
-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8백만원으로서 거창군(나)선거구 재선거 비용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검토의견은 없음.

5. 기금결산(결산서 p305~332)

(단위: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잔액 (A)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잔액 (D=A+B-C)
		수 납 액(B)	지 출 액(c)	
합 계	2,325,788	495,933	107,951	2,713,770
거창군아름예술제 기금	400,006	48,402	18,400	430,008
거창군체육회진흥기금	29,187	2,462		31,649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386,721	66,476	20,600	432,597
거창군 노인복지 기금	954,419	84,034	29,805	1,008,648
거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		100,151		100,151
거창군 여성발전 기금	530,925	169,387	19,000	681,312
거창군 식품진흥 기금	24,530	25,021	20,146	29,405

【검토의견】

- 2007년도 현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325,788천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495,933천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07,951천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713,770천원임.
- 지출액이 전혀 없는 2개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조성목표액 도달까지 기금 조성단계에 있는 기금으로서 07년도말 현재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보조금 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46,565,441	46,547,246	34,032,625	11,239,757	1,274,864
일반회계	46,420,941	46,422,746	33,908,125	11,239,757	1,274,864
특별회계	소계	144,500	124,500	124,500	
	의료보호	144,500	124,500	124,500	

※ 별도 검토의견 없음.

7. 기타사항 의견

- 결산심사는 먼저 균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시행 되었는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심사는 위민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책임해제 및 지방재정의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성과 달성 등을 확인하고, 합목적성 심사방법을 우선하고

합리성, 합법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 편성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야별 주요시정 및 개선의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조치실적을 결산승인자료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임에도 관례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요구를 하여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함.

- 이밖에도 경비지출이 회계관계규정에 저촉되었는지, 법적 근거가 없는 경비 지출이었는지, 세입 및 세외수입 징수가 부적법했는지, 등을 심사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정책임을 경비집행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책임을 형법상 공무원의 범죄 즉, 횡령·유용·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